

『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5월 4일

나. 발 의 자

김태근 의원, 박세채 의원, 윤서규 의원, 한정우 의원

이갑선 의원, 구자근 의원, 허 복 의원, 우진석 의원

김도문 의원, 김영호 의원, 석호진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5월 18일

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태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- 공동전기료 지원방법 규정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주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에 의거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공동전기료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시설물 명시
- 공동전기료 지원방법을 규정(안 제4조)
 -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

○ 검토 결과

-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지원 규정 마련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황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인 황상3주공아파트는 10개동에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415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, 185세대는 차상위계층, 모·부자가정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음
- 다만,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가 지원될 경우 관내 장기임대아파트 거주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나, 지원대상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로 명시하여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 해소 및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